

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

이 자료는 게시·배포용입니다.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·배포하는 것으로 연 1회 예방교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(시행령 제3조 제4항).

1. 직장 내 성희롱이란

사업주·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,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(법 제2조 제2호).

- 성적 언동의 예 — 신체 접촉, 외모·신체에 대한 평가, 음란한 농담이나 사진 전송, 회식 자리에서의 술 따르기 강요, 사적인 만남 반복 요구
- 행위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- 회식·워크숍·출장 등 업무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일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.

2.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

예방 교육	연 1회 이상 실시 (10명 미만은 이 자료 게시·배포로 갈음)
신고 접수	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,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함
피해자 보호	조사 기간 중 근무장소 변경, 유급휴가 등 보호조치
불이익 금지	신고자·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
비밀 유지	조사 참여자는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

3. 우리 사업장의 처리 절차 (직접 적어 주세요)

고충 상담 창구	
담당자 · 연락처	
신고 접수 방법	
조사 및 조치 절차	

4. 위반하면

- 예방 교육을 하지 않거나, 신고를 받고 조사·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신고자·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사업주 본인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
5. 도움받을 수 있는 곳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· 여성긴급전화 1366 · 국가인권위원회 1331

게시일 : 20 년 월 일 사업장명 : _____

작성 기준: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·제13조·제14조 및 시행령 제3조 —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고, 함께 제공하는 「교육 일자」를 남겨 두세요.